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8 (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 2. 제 안 이 유

- 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받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 요 골 자

- 가. 제명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나.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74명(증 10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변동없음)
- 나. 증원사유
  - 개별주택가격평가(과표) 업무 수행 : 3명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 7명

직 렬	직 급					비 고
	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0	1	2	5	2	
세 무 직	3		1	2		
사회복지직	7	1	1	3	2	

- 다. 부칙의 한시정원 삭제

## 4. 검토 결과

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 관련한 전담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증원하여 현정원 57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 붙임 : 정원관리 현황

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 정원 관리 현황

### 가. 정원 현황

(2005.09.30현재)

구분	현정원 (A)	표준정원 (B)	보정정원 (C)	B-A	C-A	별도정원
인원	575명	548명	575명	27명	-	11명

(※ 별도정원 관리현황 : 장기교육 2명, 파견 3명, 공로연수 6명)

### 나. 정원승인 현황

- 개별주택가격평가(과표) 업무 수행 : 3명
- 사회복지 전담인력 : 7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받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제명 띄워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나.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74명(증 10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변동없음)

※ 증원사유

- 개별주택가격평가(과표) 업무 수행 : 3명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장 : 7명

직 렬	직 급					비고
	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0	1	2	5	2	
세 무 직	3		1	2		
사회복지직	7	1	1	3	2	

다. 부칙의 한시정원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05.09.05 ~ 2005.09.25 (20일간)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바. 기타 :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2조중 “575명”을 “58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64명”을 “574명”으로 한다.

조례 제1767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57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64명</u></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585명</u> -----, -----.</p> <p>1. ----- : <u>574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b>총 계</b>		<b>585</b>	<b>574</b>	<b>11</b>
정무직	소계	1	1	
	군수	1	1	
일반직	소계	453	447	6
	4급	4	4	
	5급	24	22	2
	6급	119	118	1
	7급	138	136	2
	8급	111	110	1
	9급	57	57	
연구직	소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1	1	
	지도사	22	22	
별정직	소계	17	17	
	6급상당	16	16	
	7급상당	1	1	
기능직	소계	90	85	5
	기능6급	3	3	
	기능7급	8	7	1
	기능8급	15	14	1
	기능9급	30	29	1
	기능10급	34	32	2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 비용소요 추계서

##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 2. 정원의 변동 내역

○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 ⇒ 3명 증  
(7급 1명, 8급 2명)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 ⇒ 7명 증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76,412	
○인건비(100)	71,831	
- 기본급	42,638	○ 본봉 6급 1,882,600원×1명×3월=5,647,800원 7급 1,472,800원×2명×3월=8,836,800원 8급 1,061,000원×5명×3월=15,915,000원 9급 951,500원×2명×3월=5,709,000원 ○ 정근수당 36,108,600원×2/12=2,888,600원 ○ 기말수당 36,108,600원×2/12=2,888,600원 ○ 봉급조정수당 36,108,600원1/12×25%=752,200원
- 수 당	7,177	○ 초과근무수당 6,475원×10명×30시간×3월=5,827,500원 ○ 정액수당 · 가족수당 - 30,000원×10명×1.50×3월=1,350,000원
- 정액급식비	3,900	130,000원×10명×3월=3,900,000원
- 교통보조비	3,771	125,710원×10명×3월=3,771,300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명절휴가비	4,513	$36,108,600\text{원} \times 1/12 \times 150\% = 4,513,570\text{원}$
- 가계지원비	7,522	$36,108,600\text{원} \times 1/12 \times 250\% = 7,522,620\text{원}$
- 연가보상비	2,310	$36,108,600\text{원} \times 1/12 \times 1/24 \times 20\text{일} = 2,310,950\text{원}$
○물건비(200)	4,381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0	$60,000\text{원} \times 10\text{명} = 600,000\text{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3,981	$132,71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3\text{월} = 3,981,300\text{원}$